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6.7.26)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 71602)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연금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더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집합투자업자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 (02-3787-3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발생일	2016년 7월 3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가입자격	제한 없음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8150	
	운용 등	운용보수 : 0.3500 신탁보수 : 0.0200 사무관리 0.0150	
	기타	0.0010	
	총보수비용	1.2010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2영업일 기준가 · 15시30분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30분 이 전: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5시30분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 제5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윌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방법: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연금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식형 모투자신탁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70% 이상을, 채권형 모투자신탁(마이다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자산의 30% 이하를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은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90%이상(배당주 60% 이상)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시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배당주)에 선별 투자하여 높은 배당수익과 자본 이득을 함께 추구 ※배당주: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이상인 주식으로 정의함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제한
마이다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을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A- 이상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제한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오남훈	1978	책임 운용역	9	2,654억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04.01월~07.07월 대우증권 -07.07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예리	1982	부책임 운용역	2	1,790억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7.01월~11.11월 하이자산운용 -11.11월~13.06월 튜브투자자문 -13.06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종류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마이다스 퇴직연금 배당		(14.07.18~ 15.07.17)	(13.07.18~ 14.07.17)	(12.07.18~ 13.07.17)	(11.07.18~ 12.07.17)	(10.07.18~ 11.07.17)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집합투자 기구	14.21	15.43	4.04	-17.86	27.05
	비교지수	2.77	7.07	3.6	-15.07	23.4

주1) 이 투자회사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교지수로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주2) 종류 A1(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투자신탁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 와 배당수익률(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1.95%**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